

◎ 참고자료

Q&A로 알아보는 2006년 달라지는 학교 건강 검사

Q1) 학생 건강검진은 모든 학생이 받나요 ?

A) 아닙니다. 학생 건강검진은 초등학교 취학한 후 매 3년마다 받게 됩니다.
즉, 초등학교 1·4학년 학생과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만 받게 됩니다.

Q2) 건강검진은 어디에 가서 받게 되나요 ?

A) 신학기가 되면 학교에서 검진기관(병원)을 안내하게 됩니다. 참고로 학교장이 인근의 『국민건강보험법』상 검진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 2개 이상을 가급적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받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학교장과의 계약이 체결된 검진기관중에서 학생(보호자)이 선택하여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Q3) 검진기관의 선정 절차가 궁금합니다.

A) 학생 건강검진 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검진기관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학교인근의 『국민건강보험법』상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참여여부를 확인한 후 2개 이상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학생 건강검진 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검진기관(동법시행령 26조)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정된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학교인근의 『국민건강보험법』상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참여여부를 확인한 후 가급적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받아 2개 이상을 선정하여 학교장과의 계약 체결하여 당해 학교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됩니다.

※ 검진기관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이버민원실 → 민원업무 안내 → 건강검진 → 검진기관 안내

Q4) 검진기관 선정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A) 학교건강검사규칙에서는 학생 검진기관을 정할 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립학교의 경우 자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주체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검진기관 선정에 따른 일부의 오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므로 가급적 심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Q5) 건강검진을 받을 때 무엇을 준비해 갖고 가야 하나요 ?

A) 건강검진을 받게 될 때 학교에서 안내하며 기본적으로는 건강검진을 받을 때에는 검진기관에서 제공하는 문진표(일반 건강검진 및 구강건강검진용)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작성해서 지참하거나 검진기관에 가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Q6) 건강검진은 언제 받나요 ?

A) 학생의 건강검진 시기는 기본적으로 연중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시기를 두는 것이 아니며, 개별적으로 시간이 되는 주말, 방학 중 또는 하교 길에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Q7) 건강검진 비용은 누가 부담 하나요 ?

A) 건강검진 비용은 학교의 장이 전액 부담하므로 학교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건강검진 대상자가 건강검사를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학부모님에게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8) 건강검진 결과는 어떻게 받아 볼 수 있나요 ?

A)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나면, 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이 2부 작성하여 학교장과 학부모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게 되므로 각자 받아보게 됩니다. 참고로 학교의 장은 검진결과를 통보받아 건강에 이상이 있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보건교육 및 지도관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9) 건강검진 결과는 어떻게 통보해야 하나요?

A) 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에서는 검진결과서 2부를 작성한 다음 1부는 검진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1부는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합니다.

Q10) 건강검진 시 검진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

A) 건강검진은 기본항목과 추가항목으로 구분되며,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발제문 참고)

Q11) 건강검진 수가 및 비용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A) 건강검진 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보건복지부가 정한 비용을 적용합니다.(건강검사 계획서 30쪽) 즉, 기본비용에는 기본항목과 건강상담 및 행정비용이 포함되며, 추가항목은 각 항목별 금액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학교장과의 계약 체결 시 정한대로 당해 학교의 장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Q12) 학교에서 우선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 인가요 ?

A)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우선적으로 준비할 사항은 건강검사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일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미 당해 교육감이 세부계획(건강검사 계획)을 알려드렸으니 참고하여 계획 수립하시면 됩니다.

Q14) 건강검진 결과는 어떻게 보관·관리 하나요(건강기록부 기록 및 관리)?

A) 기본자료는 교무업무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며, 학생의 건강검진 결과는 검진기관에서 통보된 종이문서 형태 원본 그대로 관리합니다.

개인의 의료정보는 상대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검진기관에서 통보된 상태의 종이문서로 별도 관리하는 것이며, 차기 건강검진 시(3년후) 당해 검진기관에 사본을 제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원본은 학교에서 보관·관리합니다.

○ 작성부분 : 교무업무시스템 관리 및 작성에 대한 교육을 받으셔야 하는데 각 지역교육청 전산분야에서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고등학교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함)

교무업무시스템으로 작성하는 분야는 건강검사 계획서 15p 별지서식 제1호 서식부분(인적사항, 전염병 예방접종 여부, 건강검사 실시현황-신체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검진 현황, 별도검사 현황)입니다.

○ 보관부분 : 종이 양식부분인 건강검진 결과 통계표 및 구강건강검진 결과 통계표(별지서식 제1호의 5서식 및 6서식)은 건강검진기관에서 통보해준 원본 그대로 보관 하시며 되며, 뒷 페이지의 별도검사 결과 기록표는 별도검사 결과를 누가 기록·보관합니다. (개인 건강조사서도 붙여서 계속적으로 이관하시기 바랍니다)

차기 건강검진과 전 학년에서 이관된 건강검진은 계속적으로 누적하여 보관하면 되며, 학생이 상급학년 및 상급학교로 진학 시 계속적으로 누적된 자료를 그대로 이관하며, 고등학교 졸업 시 이를 모두 교부합니다.

다만, 졸업을 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다니던 학교에서 5년간 보관·관리합니다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 참조)

교무업무시스템상에 작성된 자료는 상급학교 진학 시 자동으로 이관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빠진 내용이 있는지 검토하여 보완 관리하시면 됩니다.

Q15) 별도검사를 실시하는 학생중 현재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기록을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A) 구 건강기록부에 표기해서서 관리해서도 되며, 건강검사 계획서 p21 별도검사 결과 기록지를 활용해서도 됩니다.

Q16)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 기본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에 대하여는 매년 신

체의 발달상황으로 키와 몸무게(중전의 앞은키와 가슴둘레는 제외)를 측정하며, 초등학교 5학년부터는 신체의 능력으로 종전의 체력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학기초(학교 건강검사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생활습관이나 개인위생 실천정도, 운동실천율 등 구조화된 설문지(건강조사 설문지)로 실시하고 건강조사 설문지의 결과를 참고하여 보건교육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강조사 설문지는 별도 보관(약 3년간)합니다.

Q17) 비만도 산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교무업무시스템에 학생의 키, 몸무게, 나이를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비만도 및 체질량지수가 산출되므로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Q18) 학생 건강검진 별지 제1호의 2서식 내지 4서식과 건강조사 설문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별지 제1호의 2서식 내지 4서식까지는 건강검진대상자가 병원에서 의사가 진찰하기 전 건강에 대해 미리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며, 건강검사 설문지는 매년 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종의 설문조사입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건강조사만 실시하면 되며, 병원에서 건강검진대상자들에 대한 문진표 결과와 건강검진을 토대로 별지1호의 5서식을 작성하여 학교로 통보하므로 보관·관리 및 보건교육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건강조사에 의거하여 학생건강기록부(교무업무시스템)에 기록할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 여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Q19) 2006년도 “학교보건기본방향”에 보면 학생 성인병 검사와 관련하여 P17에 “전교생 대상 성인병검사(비만, 고혈압, 혈당, 고지혈증)은 종료”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의 성인병 검사는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A) 네 안하셔도 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중 초등학교 4학년, 중1 및 고1학년 ‘경도 비만이상’ 학생은 혈액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중복 검사할 필요가 없으므로 올해부터는 기존에 실시하던 성인병 검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건강검진대상자를 제외한 학생들도 성인병 검사는 하지 않으나 키, 몸무게 측정 후 비만도 산출시 경도비만 이상일 경우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하여 성인병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0) 건강검진병원 선정 시 일반검진과 구강검진으로 나눌 수 있는 데 따로 병원을 선정해야 하는 것인가?

A) 건강검사 계획서 참고자료 1과 참고자료 2가 갖춰진 병원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본적으로 현 의료법에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으로 나뉘어져 있어 현재 우리나라에는 2차 의료기관 이상이어야 치과의까지 설치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그러한 병원을 선정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검진기관 자체에서는 참고자료 2에서와 같이 다른 치과의사를 위촉(계약)하는 형식으로 구강검진만을 위한 치과의를 상주하는 병원을 선정 하시고 구강검사에 대한 검사비를 별도로 주는 형식으로 할 수 있으며, 또 다른 방법으로 구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강검진기관만 학교인근의 치과병원을 따로 2곳 이상을 선정·지정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참고자료 1에서처럼 병원에 안저검사경이 있는 병원만이 건강검진 병원으로 등록되므로 안질환은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할 수 있는 항목임을 알려드립니다.

Q21) 건강검진대상자가 전입·전출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건강검진대상자가 모든 건강검사 항목을 마치고 전학을 한 경우 검진비는 전학 오기 전 학교에서 부담을 하며, 관련 자료는 모두 이송합니다(교무업무시스템의 입력은 학생이 전학 간 후 학생에 대한 모든 생활기록 및 건강기록부 등 교무업무시스템이 이송되므로 전학 간 학교에서는 학생에 대한 건강기록부의 내용을 누락부분이 있는지 확인 한 후 누락부분을 전학 간 학교에서 입력하는 것이 편리할 것임)

건강검진대상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전학을 한 경우는 전학 간 학교에서 검진비를 부담하며, 건강기록부를 작성·관리합니다.

Q22) 초등학교 4학년부터 건강검진 대상자들은 키, 몸무게로 비만도를 산출하여 '경도비만'일 경우 혈액검사 실시로 진료수가가 다른데 키, 몸무게는 병원에서 측정하여 혈액검사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입니까? 또한 혈액검사 대상자는 금식을 하라고 지도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건강검진대상자들은 키, 몸무게를 병원에서 측정하므로 비만도를 산출하게 되고 '경도비만이상' 판정이 나오면 혈액검사 대상자로 선별되어 혈액검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금식여부는 지정 검진기관의 안내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3) 규칙 제5조의2에서 검진기관을 2곳 이상 선정할 수 없는 학교는 교육감 승인을 받아 1곳을 선정할 수 있으며, 검진기관이 없는 지역에 소재한 학교는 교육감 승인을 얻어 출장검진을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교육감 승인절차에 대해 설명하여 주세요

A)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을 경유하여 도교육청제2청으로,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제2청으로 전자문서를 통해 승인신청을 하시며, 도교육청에서는 신청한 학교의 주변여건과 검진기관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통보하게 됩니다.(승인신청양식은 현재 별도 서식은 없으나 필요할 경우 도교육청제2청 홈페이지 과자료실로 탑재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Q24) 종전의 실시하던 체질검사가 없어졌는데도 교의 위촉을 해야 하나요?

A) 예, 그렇습니다. 학교보건법 제7조의2에 2항,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해 학교는 반드시 의사 및 약사를 위촉하여야 합니다. 단, 교의 수당은 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되는 것입니다.

Q25) 규칙 제14조(건강검사 실시의 예외)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신체의 발달상황 및 신체의 능력과 건강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건강검진은 다음 학년도로 연기 할 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일 때만 적용되는가?

A)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학교 전체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Q26) 혈액형 검사는 초1학년 학생에 한하여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혈액형을 알고 있는 학생도 다시 검사를 하는 것인지 모르거나 확실하지 않을 경우만 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학교건강검사규칙에 검사항목으로 정해져 있는 항목이므로 법 규정을 준수하시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Q27) 학생의 가족 병력 검사를 할 때 가족의 범위 적용은 어디까지 인니까?

A) 학생의 부모, 형제자매,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별도로 의사의 질문사항에 따라 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Q28) 검진기관에서 검진 문진표는 검사 후 검사기관에서 보관하나요?

A) 검진기관에서는 학교에 별지서식제1호의 5서식 및 6호서식인 학생건강검사결과 통보서 및 구강검진 결과통보서를 통보하게 되므로 검진 문진표는 학교에 보내어지지 않습니다.

Q29) 건강검사 표본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A) 도교육청에서는 곧 건강검사 표본학교 운영에 대한 계획은 곧 시달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0) 학생이 전 학교에서 별도의 검사를 받지 않고 본교에 전학을 왔을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당해 학교에서 별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학생 건강검사 관련 추가사항들

1. 구강검진 실시

가. 구강검진기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별표3]의 제1호 나항의 규정에 의거 구강검진기관은 치과의사 1인 이상이 “상근”하거나 구강건강검진만을 목적으로 “고용”된 검진기관을 말함.

나. 검진기관 선정 및 계약

○ 검진기관에 구강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구강검진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되, 의과검진기관과 구강검진기관을 각각 2개 이상씩 선정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 제1항 관련)

※ 의과검진기관에서 구강검진기관을 계약한 후, 학교에서 의과검진기관만을 계약하여 구강검진까지 실시하는 사례 불가

○ 법령상 학교와 지역치과의사회와의 단체계약에 의한 구강검진 실시는 불가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질의회신 사항)

2. 별도의 검사

가. 별도의 검사 실시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6조의 규정에 학교장이 실시 유무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학생 건강의 보호·증진 도모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실시 유무와 대상학년을 조정하여 실시

나. 검사결과 관리 (수정사항)

○ 대상학생(초 2,3,5,6학년, 중 2,3학년, 고 2,3학년)의 검사결과 통보서는 별도의 보관없이 관리(차기 검진기관 제출 생략)하고,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자료로 활용

※ 금년도 건강검진 대상학생(초 1,4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에 대한 별도의 검사결과 관리(2007학년도부터 적용)

-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정한 서식에 의거 기록 관리 (변동사항 없음)

3. 기타

가. 시력측정

○ 검사방법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2] 2-1 관련)

-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 : 교정시력만 검사

○ “학생건강검사결과 통보서”의 “시력”항목 기재요령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관련)

- 나안 또는 교정시력 중 해당란에 하나만 기재

○ “학생건강검진 통계표”의 “시력”항목 기재요령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3호서식] 관련)

- 교정대상 또는 교정한 학생수 중 해당란에 하나만 기재

· 교정대상 :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하지 않는 학생 중 어느 한쪽의 나안시력이 0.6이하인 학생수

· 교정한 학생수 :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학생 수

게시판에 올라온 건강검사 관련 글 들..

안양시치과협회의 횡포를 고발한다. 학생건강검진과 관련 안양시치과협회에서는 별도검사를 해주는 대가?(급당만원도 지급함) 로 올해 건강검사를 실시하는 1,4학년 또한 치과협회와 계약하여 종전처럼 검진토록하고 검진비 전액을 협회로 보낼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다. 작년에 협의된 내용은 완존히 무시한 채....

또한 치과협회에서는 단위병원에 개인행동을 하지말라는 공문을 보내고, 건강검진 기관에도 치과 협조를 받을 수 없음을 통보했다. 건강검진기관을 이미 선정 한 학교에서는 망연자실하였고 각급 학교에서는 검진기관을 선정하는데 혼선을 빚고 있는 데.....

이는 누구를 위한 잔치인지? 몇 푼의 돈에 검은 속내를 드러내는 안양시치과협회의 비양심, 횡포, 집단 이기주의를 수수방관하고 있어야 하는지? 그 놈~덜의 일방적인 요구에 치를 떨며 분노하면서도 그 누구도 어찌하지 못하고 있음이 안타깝습니다.

단지 안양시 만의 문제로 일축하지 마시고 경기도보건교사전체가 공동대응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별도 검사를 확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그 망종같은 집단이 기주의에 맞서서 대응.

그 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 우리(안양시보건교사)는 답답하고 짱나 죽겠습니다. 죽을 맛입니다.

묘안을 가지고 계시는 분 없나여???

작년에 저의 아이 학교구강검진에서 "이상없음"으로 통보되어 안심했다가 얼마 후 치통이 있어 치과에 가니 영구치 충치로 치료비 왕창 들어갔었습니다. 엉터리 날림으로 하는 구강검사 제발 그만 합시다. 단체검사 믿고 안심하다 치아 더 망치게 됩니다. -[04/11-10:11]-

의왕시치과사회에서도 1,4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학년의 구강검진 보류입니다. 교의도 취소 공문이 오네요. 답답한 마음입니다. 전체회에서 별도검사를 없애는 방법은 안되나요? -[04/11-10:18]-

1,4학년 검진기관 치과까지 압력이 들어가서 못한다고 하니 답답하네요. 별도 구강검사 안했으면 합니다. 거의 모든지역이 비슷한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04/11-11:57]-

과연 횡포일까? 횡포를 부리도록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가? 서울시의 경우 문제 없다. 경기도는 뭔가 -[04/11-20:20]-

차라리 경기도 치과의협에서 강력하게 나가서 경기도 전체가 검진을 못했으면 좋겠네요 -[04/11-20:22]-

안양시치과협회에서는 치과검진스케줄까지 지들맘대로 잠정결정을 했답니다.

1학기는 1,4학년 / 나머지학년은 2학기로 !!보건교사회랑 아무 협의도 없이 ..

-[04/13-10:36]-

구강검진비가 문제!! 학교치과의사가 학교검진(2,3,5,6학년)을 못해주겠다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하건데 1,4학년은 구강검사비가 1인당 3,090원인데 학교에 와서 하는 2,3,5,6학년은 개인별로 계산하면 250원인데 어느 바보의사가 오겠습니까? 안오는 게 당연하지.

건강검사의 구강검진에 대한 문의 조금전, 건강검사 시 구강검진 때문에 온 공문을 보고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네요.

큰 도시를 제외하면 수지같은 꽤 알려진 도시에도 치과가 있는 종합병원이나 준종합은 없습니다.

해서 학생 편의상, 병원에서 치과병원을 매칭하여 계약하고, 우리는 그 병원과 한번 계약으로 학생들이 편하게 치과검진을 받도록 했는데..이것이 치과의사들간의 알력 다툼으로 교육청에도 압력이 들어갔는지, 우리에게 그런 경우 치과는 따로 계약을 하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계약이 끝났고 며칠 후엔 건강검사를 시작합니다. 이제 바꾼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또 그쪽 치과에서도 그렇게 개별로 계약을 해서 는 일을 안하겠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치과의사들간의 문제이고, 만일 자기네끼리 한 치과만 병원하고 계약하는 것이 싫으면 자기네끼리 하지 말라고 해야지, 왜 우리가 그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교육청은 또 왜 덩달아 그런 공문을 내립니까. 그것도 이제서야. 그럴것이면 아예 처음부터 그런 공문을 보내야지 계획 다 세우고 시작했는데 이제서 그러면 어떻게 하죠?

공문에 건강검사 계획을 3월에 다 세우라고 되어있던데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2, 3학년들의 치과검진만 해도 누가 반당 5,000원 받고 1,0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의 구강검진을 해준답니까? 도대체...구강검사를 그렇게 매년 해야하는 이유는 또 뭐가있네요.

1학년 때...검사하면 그 뒤엔 관리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초등학생이라면 또 몰라도 저희는 인문계고등학생인데 언제 치과를 매일 그렇게 다닐수가 있겠어요.

구강검사는 별도검사인데..별도검사는 도마다 지정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내년엔 2,3학년 구강검사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건강검사도 그렇고 구강검사도 그렇고 건강한 학동기 아이들 가지고 의사들의 밥벌이 대상이 되는게 아닌가 싶네요.

이번 건강검사는 누가 주장해서 이렇게 만들었는지..그동안 우리 대표들은 여기에 참석을 안한건지...정말...화가 납니다.

건강검사에서 이상나오는 아이들의 퍼센트가 극히 미미한데도 중학교와 초등학생까지 건강검사를 늘인 것을 보면...세금 걷어서 왜 이런 엉뚱한 짓을 하는지 분통이 터집니다.

먼저 예방을 위한 교육에 힘써야지..매일 병걸렸나 안걸렸나만 확인해서는 무슨 소용이랍니까?

실무자인 우리는 다 어이없어하는 이런 제도를 대체 누가 만든건지...

올화통이 터져서 못견디겠네요.

건강검진병원은 배짱이라.... 건강검사신문고에 글 남겼는데 안 떠서 이곳에 다시 올립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병원과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학교에 알아보니 정말 병원의 횡포가 도를 지나칩니다. 문진표가 병원에서의 혼잡성이유로 학교에서 나누어주는 것은 시간절약차원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검사결과를 개별통지해야 하는데 2주에 한번씩, 아니면 4주에 한번씩 일괄 학교로 보내어 준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개별로 나누어주랍니다.

문진표 학교에서 작성 다하고 검사결과지 학교로 2주, 4주 묶어서 일괄 학교로 다 보낸다면 이것이 단체검진과 무엇이 다릅니까. 검사결과를 병원검진후 가능한 빨리 결과지를 받아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 계약서 써서 병원에 보냈더니 병원에서는 자신들이 만든 계약서 보내와 이대로 해주지 않으면 병원검진 못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리고 교육청은 더 가관입니다.

6월 19일까지 학교건강검사 추진실태 점검계획 등 알림 공문에서 교육청에서 보낸 공문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점검 나온답니다. 정말 학교일선의 상황을 완전히 무시한 채 업무를 하란 말인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정말 속상합니다.

2005년 건강검사 시행 전 교육부에 제출한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대한 의견서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교육연구회
전교조 보건위원회

1. 개괄

- 학교신체검사제도의 대안으로써 도입한 학교건강검사제도가 초·중·고 학생의 발달과정 및 건강학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인 임상병리검사 위주의 건강검사로 실시되는 것에 대하여 우려함
- 학생들의 발달과정, 성별, 건강위험행위 등을 고려하여 건강검사의 항목을 첨삭·추가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수준을 통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예: 여학생-생리, 초등학교-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중학교-게임중독, 고등학교-우울증 등)
- 건강검사와 관련하여 전염병 예방접종, 정신건강 증진 등 국가수준에서 집중적으로 예방관리하고 있는 항목에 대하여는 병의원 뿐만 아니라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등 공공의료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학교건강검사제도를 바탕으로 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의 취지는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건강위험행위를 감소시켜 자기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인 바, 학생들은 건강검사와 관련하여 건강검사 안내 및 건강검사 결과 등에 관한 보건의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음. 이에 보건교사가 건강검사와 관련하여 교실 보건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간, 내용 등에 대한 의무 규정을 제정하여 학교건강검사제도가 보건의교육의 일환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건강검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학교의 장이 부담하도록 하되, 학교건강검사 결과 치료·보호 또는 교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하는 정도로 곤궁한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 대하여 관련 진료비, 검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학교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건강조사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그 결과 기록은 다음과 같이 실시할 것을 제안함.
 - 발달상황은 생활기록부와 통합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발달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키, 몸무게, 비만도 등)단, 초·중·고학생 중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하는 학생의 경우 별도의 검사부분에

대하여 그 결과를 생활기록부와 통합함(논의 필요)

- 신체능력 측정결과는 건강기록부에서 분리하여 신체활동능력결과지(가칭)에 기록하도록 하여, 학생체력증진을 위하여 담당교사 및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건강조사는 예방접종 실시여부, 건강행태 및 생활습관 등 구조화된 표를 참고하여 학교의 사정에 따라 건강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 요약호 학생에 대한 결과물만 기록·보관하도록 함.

- * 1안 : 건강검진 기관에서 전산통계 처리된 학생 건강검사 결과를 디스켓이나 CD로 제출하도록 하여, 단위학교 건강증진 계획 수립 및 학생 개인별 건강관리의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초·중고 단위학교 건강정보 시스템(가칭)에 일괄 입력함. 또한 초·중고 단위학교 건강정보 시스템(가칭)에 보건서비스 누가 기록 항목을 신설하여 학생 개인별 보건실 이용현황, 학생의 일상 주요 건강문제 등을 기록하여 일상 건강생활행태를 확인하고 나아가 학생 건강검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초·중·고학생 중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부분에 대하여 그 결과를 초·중고 단위학교 건강정보 시스템(가칭)에 입력함.

- * 2안 : 초·중·고학생 중 건강검진을 받는 학생의 경우에는 건강검사 결과지를 보건실에 보관함. 초·중·고학생 중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 부분에 대하여 건강기록부에 수기 기록함

- * 3안 : 초·중·고학생 중 건강검진을 받는 학생의 경우에는 건강검사 결과지를 보건실에 보관함. 초·중·고학생 중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 부분에 대하여 검사결과지를 개인용, 보관용 각각 1부 작성하여 개인용 1부는 학생에게 배부하고, 보관용 1부는 검사결과지 원본을 보관함. 단 건강조사결과 요약호학생 및 건강검진 후 보호, 주의가 필요한 학생에 한하여 별도의 건강기록부를 작성하여 집중관리함

2. 세부의견

가. 건강검사의 계획 수립

o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 실시를 위하여 매년 소요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건강검사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건강검사 결과 치료·보호 또는 교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하는 정도로 곤궁한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 대하여 관련 진료비, 검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종합건강검진 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하는 정도로 곤궁한 가정의 학생이 검사 결과 건강상의 결함, 질병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명되어도 경제적 이유로 병원방문 및 진료이행을 꺼려하는 경

우가 있음.

<일본 학교보건법 제 17조, 제 18조>
제 17조 지방공공단체는, 초등학교, 중학교, 중등교육 학교의 전기과정 또는 맹아학교, 농아학교 혹은 양호학교의 소학부, 중학부의 아동 또는 학생이 전염성 또는 학습에 지장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 학교로부터 치료의 지시를 받았을 때는, 해당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그 질병의 치료를 위한 의료에 필요로 하는 비용에 대해 필요한 원조를 실시한다.
1. 생활보호법(쇼와 25년 법률 제 144호)제 6조 2항에 규정하는 요점 보호자
2. 생활보호법 제 6조 2항에 규정하는 요점 보호자에게 준하는 정도로 곤궁한 사람으로 정령으로 정한 경우
제 18조 국가는, 지방공공단체가 전조의 규정에 원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원조에 필요로 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나. 건강검사의 구분-참고 <1>

o 건강검사의 구분 및 방법

- 발달상황 : 키, 몸무게를 교직원이 측정
- 신체능력 : 달리기, 오래달리기-걷기, 제자리멀리뛰기, 팔굽혀펴기, 팔굽혀 매달리기, 윗몸일으키기 및 앉아 윗몸앞으로굽히기 능력을 교직원이 측정
- 건강조사 : 예방접종의 실시여부, 건강행태 및 생활습관 등 구조화된 표를 참고하여 학교의 사정에 따라 교직원이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보건교사가 요약호 학생을 선별하여 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함 (여학생의 경우는 생리통 등 추가함)
- 건강검진 : 건강상의 결함이나 질병의 유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검진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다. 건강검사 관련 보건교육

o 현재 초·중고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시력, 구강검사, 소변검사, 결핵검사, 성인병 검사를 비롯하여 고등학교 1학년 종합건강검사시 검사의 안내,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 해석 등과 관련하여 별도의 보건교육시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건강검사에 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여 건강검사 시행 및 추후 건강관리 이행시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되어 결국 건강검사의 객체로 전락함.

o 이에 보건교사가 건강검사와 관련하여 교실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간, 내용 등에 대한 의무 규정을 제정하여 학교건강검사제도가 보건교육의 일환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 최소한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 한하여, 건강검진 시 건강검사 안내, 건강검사 항목 및 검사결과 의미 등에 관하여 보건교사가 교실 보건교육 수업을 각 학급당 적어도 4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보건교육과정 일부 요약(미국)	① 초등학생을 위한 성장 건강 교육과정(Growing Healthy curriculum) : 학생 개인의 생활양식을 개선시키는 목적
	②. 고등학교 수준에서, 10대 건강수업 학습단위(Teenage Health Teaching Modules, THTM)
	③ 당신의 신체를 알고 있는가 과정(Know Your Body course) : 학생들이 위험을 감소시키는 교육에 의하여 검진활동을 통해서 그들 자신의 심혈관 위험 요인을 인식하는데 초점을 둠
	④ 탐구와 도전 프로그램(Quest and Dare program) : 약물과 알콜 예방 등
	⑤ 건강팩 과정 : 소비자보건 분야로 아동들이 보건치료를 위하여 방문하는 동안 아동들에게 5개의 기본적 대화 기술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대화하도록 가르침 - (1) 보건의료제공자와 대화하기[T], (2) 경청하고 배우기[L], (3) 질문하여 물어보기[A], (4) 제공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D], (5) 완성하기까지 하기[D]: 첫 글자(TLADD)는 아동들이 배우는 것을 돕고 그들의 건강소비자 책임을 기억하도록 두문자어(頭文字語)로서 사용

라. 예방접종 및 정신건강 증진 등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 모색

○ 현행 건강기록부 상 예방접종 유무는 전적으로 학부모의 진술에 의하여 작성되며, 홍역만 접종여부에 대하여 증명서를 발급함. 홍역 뿐만 아니라 법정 전염병 예방접종 유무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등 관계 부처와 연계하여 학생 예방접종 누가기록이 국가수준의 전염병 관리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초등학생의 경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중학생의 경우 게임 중독 여부, 고등학생의 경우 우울증 등을 검사하거나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하여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K-YSR)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정신건강증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되, 지역의 정신보건센터 등과 연계하여 국가수준의 정신건강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참고1>

구분	초1	초2-3	초4	초5-6	중1	중2-3	고1	고2-3	비고
키	0	0	0	0	0	0	0	0	

몸무게	0	0	0	0	0	0	0	0	
눈	시력	0	0	0	0	0	0	0	
	색각			0		0			
	눈병	0		0		0		0	
소변검사	0		0		0		0		
결핵검사					0		0		
	치아	0	0	0	0	0	0	0	0
구강	0	0	0	0	0	0	0	0	
귀(청력, 꺾병)	0		0		0		0		
기관능력	0		0		0		0		
혈압	0		0		0		0		
혈액검사									
간염검사	0								
혈액형	0						*(X)		
혈당							0	0	
총콜레스테롤							A(o)	A(o)	경도비만 이상일 경우
GOT/GPT							*(o)	0	
혈색소							0	0	여학생만(?) 남(저소독층) 보건교사 의뢰 학생에 대하여 별도검사 및 의료상담 실시
기타 (의사필요시)									
* 논란 초등(1,4)-ADHD, 중(1)-게임중독, 고(1)-우울증 ()교육부안 or 초4,중1,고1 자기행동평가척도 검사실시 O 실시 A 필요학생만									

마. 건강검진 절차

○ 기관 선정 :

* 1안

: 학교의 장이 당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내의 <국민건강보험법상> 검진기관을 2개 이상 1차 선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에서 심의후 최종 검진기관을 선정함. <국민건강보험법상>검진기관 선정시 단위학교 학교보건위원회(가칭)가 심의 자문하도록 하며 이에 대하여 학교의 장은 특정한 사유없이 그 결과를 따르지 않을 수 없음.

* 학교의 장이 당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내의 <국민건강보험법상> 검진기관 2개 이상 선정하여 건강검진 계약을 체결함. <국민건강보험법상>검진기관 선정시 단위학교 학교보건위원회(가칭)가 심의 자문하도록 하며 이에 대하여 학교의 장은 특정한 사유없이 그 결과를 따르지 않을 수 없음

○ 건강검진

* 1안

: 검진기관이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신체의 발달상황, 건강검사 및 검진 실시함. 단 검진 의료인력은 병원 직접 방문시와 동일하게 구성하도록 함. 건강조사 결과 요양보호사 및 보건교사가 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한 학생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사 및 진료 실시함.

☞ 저소득층의 맞벌이 부부가정, 결손 가정 등 학생의 병원 직접 방문을 독려할 지지자가 없거나 학교수업, 학원 수강 등으로 별도의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 학생 건강검진이 방만해질 가능성이 있음. 일례로 학생 적성검사 등은 학교에서 집단 검사하여 검사의 효율성을 높임.

* 2안

: 학생들이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신체의 발달상황, 건강검사 및 검진 실시

o 결과 제출

: 검진기관이 검진결과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학교보관용 1부는 전산통계처리 가능하도록 디스켓이나 CD로 제출함)

바. 결과의 기록 및 활용(개괄 부분 참고)

환경위생 및 먹는 물의 효율적 관리방안

강원보건위원장 지은숙

I 들어가며...

2004년 이후 사회적으로 환경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각 부처마다 규제 수준이 중구난방인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앞 다투어 발의되고, 2005년 정부에서 환경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정부 각 부처로 흩어져 있던 실내공기관리를 환경부로 통합하는 논의가 이루어져,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법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와 노동부가 제외되었다.

노동부는 환경관리자, 보건관리전문가가 사업장마다 배치되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던 터라 별 문제가 없으나 교육부는 아무런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도 없이 학교보건법에 몇 줄 관련 조항을 삽입하고 환경위생관리자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붙여 교육활동에 전념해야 할 40만 교원을 시설관리인으로 내모는 최악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

더군다나 기존에 행정실에서 담당해 오던 각종 시설관련 업무를 환경위생관리 항목에 포함하여 학교현장에서 업무분장으로 인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올바른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을 모색해 보고, 환경위생관리자 지정에 교원을 포함시키는 학교보건법시행규칙 개정이 얼마나 위법적인 일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 환경위생관리(자) ” 무엇이 문제인가?

1.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은?

2004년 12월 환경부는 관계부처 합동회의(국무조정실,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를 통해 140여쪽 분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이 중 학교실내공기질 관리의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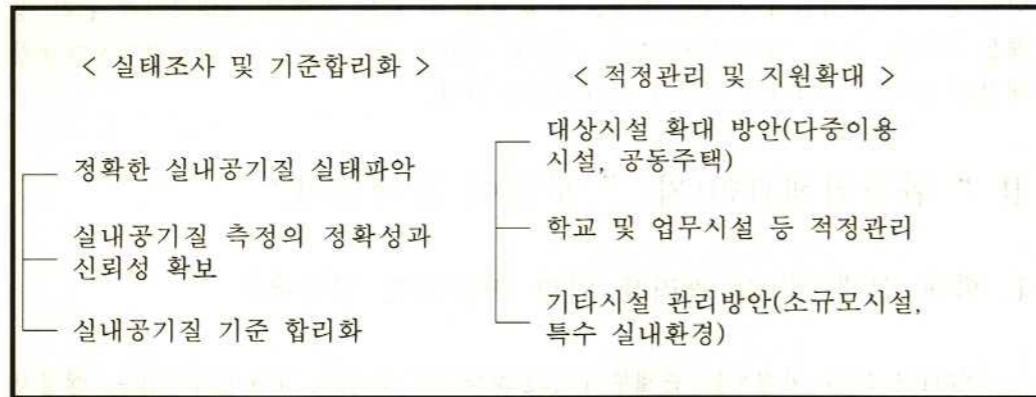
[표1. 각 부처별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관리법	내용	환경관리자 지정	비고
다중이용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시	시설관리자가 담당	교육부, 노동부를

시설 공기질관 리법	설관리자의 교육 횟수, 시 간, 경비, 방법, 교육기관에 대한 내용 규정, 실내공기 질 측정후 시설, 설비 개선 명령 기간, 개선 계획서 제 출, 보고 등 시행규칙에서 규정	:전문가 측정 의뢰. 시설, 설비 개선의 선순환 담당	제외한 전 부처 (통합 전: 주차장-건설교통부 공연장-보건복지부 등)
산업안전 보건법	환경관리자, 보건관리자 사 업장마다 전문가 배치	환경관리자(전문가) 배치, 직접 측정	노동부 (산업재해 예방에 주 력)
학교 보건법	학교장이 학교 직원중 환경 위생관리자 지정. 교육감, 교육장은 개선 및 필요조치 명 할 수 있음	직원 중 학교장이 지정 : 특별, 정기, 일상 점검 후 기록 비치	직원을 교직원으로 자 의적 해석, 측정,설비 개선의 업무를 교원에 게 떠 맡김

아래 Box로 처리된 부분은 2004년 12월 환경부는 관계부처 합동회의(국무조정실,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를 통해 수립된 140여쪽 분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안의 내용 중 계획의 구성체계와 학교 공기질관리 부분만을 발췌한 내용이다.

기질 관리 기본계획안의 내용 중 계획의 구성체계와 학교 공기질관리 부분만을 발췌한 내용이다.



< 실내공기오염 관리방안 >

건축자재 등 오염원 사전관리 (오염원 제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제 발전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제품 관리
환기설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기설비 기준 설정

(환기제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기설비 설치비 지원
공기정화설비관리 (제거제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기청정기 관리강화 및 정보제공

[표1.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수립된 실내공기질관리 기본계획 內 부문별 관리대책]

서울시 교육청 조사결과(학교, 2004년)

- 서울시 교육청이 고려대학교에 의뢰한 조사에서 대부분의 지점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150mg/m³)을 초과하였으며 최고치는 610mg/m³에 이르는 등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이산화탄소 농도도 환기부족 등으로 상당수의 지점에서 기준(1,000ppm) 초과
- 총부유세균도 과반수가 넘는 지점에서 다중이용시설 기준(800 CFU/m³)을 초과하여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 분	CO ₂ (ppm)	PM10 (µg/m ³)	포름알데히드 (ppm)	톨루엔 (ppm)	총부유세균 (CFU/m ³)	
기 준	1,000	150	0.10	0.07	800	
OO학교	1지점	601	144	0.066	N.D	475
	2지점	1,175	610	0.064	0.35	764
	3지점	1,561	330	0.039	0.05	985
	4지점	1,306	190	0.021	N.D	878
	5지점	1,943	320	0.031	0.08	1,230

* 포름알데히드는 다중이용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톨루엔은 일본 권고기준 적용

3. 실내공기오염의 실태 및 현황

오염물질별 실내공기질 현황

-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신축 건물일수록 오염도가 높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낮아지는 경향
- 미세먼지는 오래된 시설일수록 높게 나타나며 총부유세균은 개별 시설의 용도와 위생상태에 따라 차이 발생
- 이산화탄소는 재실자의 수, 환기상태에 따라 농도가 다르며 일산화탄소는 연소기구의 유무에 따라 차이 발생

[기타 시설 관리방안]

가.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1) 관리의 필요성

<학교 실내공기질의 특징>

- 학교의 교실환경은 중앙공급식인 공기조절 장치가 아니라 대부분 창문을 이용한 자연환기시스템으로 외부 환경영향에 취약
 - 외부 환경영향을 차단하기 위하여 2층창 등으로 창문을 밀폐하여, 건축물의 단열재, 실내내장재 등에 의한 유해물질 방출
- 학교는 같은 면적에 활동하는 학생수가 사무실용 빌딩에 근무하는 사람보다 약 4배 이상 많아 학생활동에 의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으로 실내 공기 열악
- 특히, 학교 교육은 미술·과학·가정수업 등의 오염원으로 인하여 다양한 오염물질 존재

☞ 자연환기시스템방식으로 외부 환경영향에 취약한 학교공기질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학교자체관리보다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실내공기오염의 실태 및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의 경우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총부유세균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는 노후시설, 과밀학급 등의 문제로 측정과 기록위주의 관리가 아닌 시설개선, 급당 재적수 축소 등의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호주의 경우 2006년 현재 학급당 평균 22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공기질 교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3) 개선방안

□ 효율적인 유지관리 기준 및 행정체계 확립

-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관리항목 추가 및 관리기준 강화
- 신축학교에 대하여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에 대한 사용제한 규제 도입 추진
-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관련부처, 전문가 및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 협의체 설립

□ 학교 공기질 평가를 위한 측정방법 설정 및 정기적인 측정

- 정확한 측정과 관리를 위하여 학교실정에 적합한 실내공기질 평가를 위한 측정방법 설정
- 학교시설 관리자는 정기적인 검사와 측정을 통하여 발생오염물질의 발생경로를 파악하여 오염물질 발생을 근원적으로 제거

□ 전담인력 지정 및 교육

- 장기적으로 환경보건 전담인력을 육성하여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배치하는 방안 검토
- 학생, 학교직원을 대상으로 실내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 보건(환경) 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방안 검토

□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학교 실내공기질 적정관리를 위한 지침서를 개발하여 보급(2005년까지)
- 오염물질다량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환기시설 설치기준 등 학교건물의 개조나 건축시 사용할 수 있는 설계지침 작성 제공

아무런 인적, 물적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부는 학교공기질 관리를 독자적으로 하겠다며 각 학교에 환경위생관리자 지정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학교현장에서는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학교실내공기질은 마땅히 지자체와 연계되어 관리 되어야하지만, 아직 올바른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학교실내공기질은 과연 보건교사의 몫으로 남아야하는가?

☞ 신축학교에 대하여 건축자재 사용제한 규제는 대체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 정책인가?

☞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 협의체는 설립되었는가?

설립되었다면 협의체에 참여한 관련부처 및 전문가는 누구인가?

☞ 한가지 궁금한 것은 [오염물질다량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환기시설 설치 기준 등 학교건물의 개조나 건축시 사용 할 수 있는 설계지침]은 작성되었는지?

작성되었다면 그 지침은 과연 환경위생담당자로 지정된 보건교사에게 시달되었는지 . . .

☞ 교육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방안으로 환경보건 전담인력의 육성 배치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전담인력이란 보건직공무원을 말함일 것이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학교보건을 위한 인력도 세분화, 전문화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건강하고 깨끗한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전문분야 인력들의 다각적이고 유기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교사(보건교사) - 교육부가 제시한 대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통해 환경, 건강에 대한 교육을 실시.

보건직공무원 - 시설담당자와 협력하여 시설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학교환경위생점검 실시 및 관리에 필요한 조언.

행정실 - 지방자치단체 혹은 사설용역업체와의 행정적 연계를 통해 시설관리업무 처리.

※ 건강하고 깨끗한 학교환경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보건직공무원의 확대배치가 필요하다면 마땅히 확대배치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혹시 목적과 수단이 뒤 바뀌지는 않는지 우리 모두 지켜볼 일이다.

2. 내용은 시설관리, 제목은 환경위생

【폐기물】

점검항목	주요 점검내용
폐기물의 구분, 처리방법·횟수는 적당한가	우수 : 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류하고 정기적으로 처리
폐기물 용기의 재질, 구조 등은 적당한가	우수 : 용기의 재질과 구조가 안전하고 위생적임
폐기물용기 및 배치 장소는 청결한가	우수 : 청결하고 정리 정돈이 매우 잘 되어 있음
실험폐수는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가	우수 : 성상별로 일정한 장소에 수거하여 위탁처리

【먹는물 및 상·하수도 관리】

점검항목	주요 점검내용
먹는 물의 위생관리는 적당한가	우수 : 정수기, 지하수의 수질검사 실시
상·하수도 도면이 비치되어 있는가	우수 : 상·하수도 도면비치
수도관은 누수 및 노후하지 않는가	우수 : 누수 및 노후배관 방지사항 없음
물탱크는 정기적 청소와 점검을 하였는가	우수 : 연4회(음용) 또는 연2회(생활용수) 청소실시 및 점검 기록관리
우수오수시설 설비는 제기능을 하는가	우수 : 배수 원활

【화장실】

점검항목	주요 점검내용
청결상태, 채광조명, 환기상태가 양호한가	우수 : 4-9월(3회 이상/주), 10-3월(1회이상/주)소독을 실시하고 채광·조명·환기상태 양호
손씻는 전용시설과 소독설비가 있는가	우수 : 손 씻는 전용시설과 소독설비 설치
비품비치 상태 및 시설설비는 고장이 없는가	우수 : 비품(비누, 화장지 등) 비치, 시설 설비 적정
정화조는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우수 :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기타】

점검항목	주요 점검내용
청소·소독시기 및 방법은 적당한가	우수 : 전염병예방법령에 의거 4-9월(1회이상/2월), 10-3월(1회이상/3월) 소독을 실시
취 및 위생해충 등을 제거하여 없는가	우수 : 취 및 위생해충 미발생
수목·화초의 방제시기 및 방법은 적당한가	우수 : 적절한 시기에 저독성 약제 사용하여 방제 실시

【수영장】

점검항목	주요 점검내용
수영조 욕수는 수질기준에 적합한가	우수 : 수질기준 적합
시설설비 및 부대시설의 관리는 양호한가	우수 : 파손 및 고장이 없고 위생적으로 관리
입영자의 위생·안전지도가 이루어지는가	우수 : 입영자 주의사항에 대한 지도 및 안내문 게시

【구내매점 위생관리 점검표】

점검항목	점 검 내 용
환경위생관리	매점 주변 및 상품진열대 등의 청소를 실시하고 있는가?
	폐기물통(쓰레기통)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식품보관	식품별 보관요령에 맞게 냉장·냉동 보관을 하고 있는가?
취급품목의	무신고(허가) 제품 판매여부?
	유통기한 경과 및 변조제품 판매여부?

	표시기준위반(표시사항 미표시·허위 기재 등)제품 판매여부? : 제품명, 식품의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유통기한, 내용량, 원재료명 및 함량(5가지이상) 등 확인
	부패변질된 식품 판매여부?
	무신고(허가)로 식품 조리 판매 여부?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커피, 컵라면 판매여부?
자동판매기	학교내 커피, 탄산정량음료, 컵라면 등의 자동판매기 설치여부?
특이사항	

대부분 학교의 관리자와 행정실장 심지어는 공무원노조에서조차 “학교보건법 시행령”상의 보건교사의 직무규정을 들어 환경위생관리를 보건교사의 업무로 몰아세우고 있기에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보건교사의 직무를 분석해보자. (자료출처 : 건사연)

가.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상의 보건교사의 역할

☞ 학교보건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4>

제9조 (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위향상, 영양관리, 질병의 치료 및 예방, 약물남용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제13조 (교직원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결과 또는 건강검사에 갈음하는 건강검진의 결과 필요한 때에는 교직원에 대한 질병의 치료 및 근무여건의 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5.3.24>

제15조 (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개정 2002.8.26>) 학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를 담당하는 학교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한다)·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둔다. <개정 1991.3.8, 2002.8.26>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 (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 다음과 같이 학교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둔다.

1. 보건교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실시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라~과 : 중략

과. 기타 학교의 보건관리

보건교사는 학교보건법에 보건관리(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위향상, 영양관리, 질병의 치료 및 예방, 약물남용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를 위해 둔다라고 되어있다.

보건교사 직무조항 과, 기타 학교의 보건관리로 명시된 것으로 보아서 보건교사의 직무를 만들 당시에 직무조항 가~타까지를 보건관리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교사는 교사로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와 학교보건법에 명시된 <보건관리를 위해 둔다.>를 기본으로

직무조항의 ‘학교환경위생의 유지개선에 관한 사항’도 지도를 하여야 하는 보건관리 측면에서 해석하면 무리가 없어 보인다.

나. 환경위생관리 근거법률

실내공기질관리와 함께 환경위생관리 항목에 포함된 일반 환경위생 항목은 누가 봐도 교사가 담당할 수 없는 시설관련업무를 알 수 있으며,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환경위생관리 항목별 근거가 되는 법률들을 살펴보자.

[수도법]

제9조의12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①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영 제24조의2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주기로 급수관의 상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일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1조 ④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낡았거나 수도물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3조 ②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4항과 제36조제1항에서 같다)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준용 - 환경위생점검기준에 명시

제6조 (청소 및 위생점검) ① 「수도법 시행령」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저수조를 6월마다 1회이상 청소하고 그 위생상태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 2006.6.29>

[하수도법]

제39조 ②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 자가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당해 시설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따라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여 제80조제3항제1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수도법, 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 등을 살펴보면 환경위생점검이 필요한 모든 항목들이 시설관리자가 담당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지금껏 학교자체관리보다는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행정실에서 담당하여 처리하던 일들이며, 이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수를 출장비와 점수를 받아가며 지금껏 받아오지 않았는가?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안전표지 설치물 생활화 합시다.

강원도춘천교육청

수신지 수신자 참조
(경우)

제목 학교환경관리과정 교육훈련 대상자 추천의뢰

1. 총무과-6738 (2005.06.22.)호 이첩입니다.
2.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학교환경관리과정 교육훈련대상자를 아래 서식에 따라 2005. 6. 27(월)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훈련내역

과정구분	교육과정명	훈련기간	교육훈련기관	교육대상	비고
선택전문	학교환경관리과정	2005. 7. 11-7. 15	국립환경연구원	일반직 6급이하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강원도 춘천시교육청 연수대상자 추천의뢰 공문]



2	교육연수 의식 제고	교육연수 의식 제고	2
3	리더십 함양	변화와 혁신, 셀프 리더십	4
4	공직자로서의 인간관계 능력 향상	인간관계의 Success Road-map 성격과 대화의 기법	2
5	우리 문화의 이해	우리 문화의 이해	2
6	직장내 건강관리	즐거움 넘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2
소계			16
1	교육행정직 공무원에 필수한 실무능력 향상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업무 인사행정 실무 교육제정의 이해와 실제 광역직 기차 관리 교육복지 실무 학교시설 및 환경 관리 교육관련 법규 민원사무처리의 실제 학교급식 관리 보안 및 비상대비 업무 계약 실무 공유재산 관리 감사행정의 실제 NEIS 관리 실무 분수(호수) 실무	3 3 4 2 2 3 2 2 2 2 2 2 2 2

[부산시교육청 일반직 신규실무자과정]

대전교육연수원

연수시간표안내

제 1 주 (2006.03.13 - 2006.03.17)

기능직 전문과정 직무연수

구분	2006-03-13(월)	2006-03-14(화)	2006-03-15(수)	2006-03-16(목)	2006-03-17(금)	2006-03-18(토)
1 교시 09:00 - 09:50	개강식	학교관리 (303-0학교급제 배와관리(환인형.hwp)	양성평등과성회 운영방 (성취동태방교육.hwp)	학교시설관리 (시설관리.hwp)	학교수목관리 (학교수목관리.hwp)	
강의실	강의실206	강의실206	강의실206	강의실206	강의실206	
2 교시 10:00 - 10:50	가스안전 (가스안전.hwp)	학교관리 (303-0학교급제 배와관리(환인형.hwp)	양성평등과성회 운영방 (성취동태방교육.hwp)	학교시설관리 (시설관리.hwp)	학교수목관리 (학교수목관리.hwp)	
강의실	강의실206	강의실206	강의실206	강의실206	강의실206	
3 교시 11:00 - 11:50	가스안전 (가스안전.hwp)	학교관리 (303-0학교급제 배와관리(환인형.hwp)	양성평등과성회 운영방 (성취동태방교육.hwp)	학교시설관리 (시설관리.hwp)	학교수목관리 (학교수목관리.hwp)	
강의실	강의실206	강의실206	강의실206	강의실206	강의실206	
4 교시 13:00 - 13:50	인터넷활용 (305인터넷활용(김종재).hwp)		공무원연급제도 (연급제도.hwp)	지방공무원회의록 무관리 (복무관리.hwp)	학교소방의안전 관리및응급조치 (소방안전관리.hwp)	
강의실	강의실206		강의실206	강의실206	강의실206	
5 교시 14:00 - 14:50	인터넷활용 (305인터넷활용(김종재).hwp)		공무원연급제도 (연급제도.hwp)	지방공무원회의록 무관리 (복무관리.hwp)	학교소방의안전 관리및응급조치 (소방안전관리.hwp)	
강의실	강의실206		강의실206	강의실206	강의실206	

[대전시교육청 기능직전문과정 직무연수 중 시설관리에 환경위생관리 항목 포함]

3. 먹는물 관리 급식으로의 일원화 제안

과거 급식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담당해오던 각종 급식관련업무(먹는물, 우유급식, 중식지원 등)들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아직도 반강제적으로 보건교사에게 업무분장되고 있다.

특히 먹는 물 관리는 끓인물 공급이라는 원칙을 정해놓고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정수기를 설치하고 그 관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는 학교에서 오히려 상수도 불신풍조를 부추기는 꼴이 되고 있기도 하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서는 첫째 지자체와 연계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상수도 공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둘째 지하수 이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정수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학교에서는 필터교체, 소독 등은 시설관리차원에서 행정실에서 담당하며, 수질관리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소에서 담당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특히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도 현재 각 학교에서 이원화 되어 있는 먹는물 관리는 급식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하는것이 효과적일것이다.

☞ 학교급식법 제 19조(출입·검사·수거 등)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식품위생 혹은 학교급식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급식관련 시설에 출입하여 식품, 시설, 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을 검사 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9조(수거 및 검사의뢰)

① 법 제19조 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1. 미생물검사
2.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 및 안전성 검사

☞ 2007 식중독대응매뉴얼

라. 미생물 검사

학교급식 시설에 대한 미생물 검사는 교내에 조리실을 갖춘 학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되, 관할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자체 또는 지역보건소,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연간 계획을 세워 실시한다.

(1) 미생물 검사항목 및 권장규격

미생물 검사는 학교급식시설의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주, 도마, 칼 및 식기류, 먹는 물에 대한 정기검사와, HACCP시스템이 올바르게 적용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표본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기검사의 항목과 미생

물의 권장규격은 “식품공전”에 따른다.

(2) 정기 검사

- 행주(사용 중의 것은 제외한다)

· 대장균 : 음성이어야 한다.

- 칼·도마 및 식기류 (사용 중의 것은 제외한다)

· 살모넬라 : 음성이어야 한다.

· 대장균 : 음성이어야 한다.

- 먹는 물(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제4호에 따라 관리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58조]

[별표 15의2]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제58조의2관련)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IV 맺으며

학생 및 교직원에게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건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의 각 부서에서 다 함께 협조하고 노력해야 할 일이지 보건교사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를 수 없다.

‘건강’ ‘보건’ ‘위생’이란 단어만 들어가면, 심지어 ‘컴퓨터바이러스’ 관련 공문마저도 보건실로 업무배정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은 이제 더 이상 학교현장에서 사라져야다.

보건교사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스스로 자기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고, 시설관리자는 건강하고 깨끗한 학교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애쓰며, 영양교사는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 새싹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이상적인 학교보건정책의 수립을 기대한다.

◎참고자료.

자료출처 : 전교조보건위, 건사연

<환경위생관리자 지정 관련 “직원”에 대한 법령 해석>

환경위생관리자 지정 관련 학교보건법령 주요 내용

▶ 목적

○ 학교보건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4>

▶ 보건관리 및 보건교사 배치 목적

○ 학교보건법

제9조 (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위향상, 영양관리, 질병의 치료 및 예방, 약물남용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제13조 (교직원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결과 또는 건강검사에 갈음하는 건강검진의 결과 필요한 때에는 교직원에 대한 질병의 치료 및 근무여건의 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5.3.24>

제15조 (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개정 2002.8.26>) 학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를 담당하는 학교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한다)·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둔다. <개정 1991.3.8, 2002.8.26>

▶ 환경위생 및 환경위생관리자

○ 학교보건법

제4조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학교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분진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음료수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5.3.24>

제 5, 6조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①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1.14>

1.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3의2.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4.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학교의 장은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상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점검의 종류 및 시기는 별표 6과 같이 하고, 점검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5.11.14>

④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비치하여야 하고,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4>

제3조의2 (검사요청 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 안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점검방법의 지도 및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오염의 정도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

②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학교에 대하여 오염물질을 직접 검사하게 하거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오염의 정도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1.14]

제3조의3 (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①학교의 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환경위생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지정한 환경위생관리자 및 환경위생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환경위생의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에 이들을 위탁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1.14]

▶ 환경위생관리자 지정 관련 '직원'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의 소속직원의 범위 검토

□ 질 의 자

- 서 면 : 인천광역시교육감
- 인터넷 : 3명(교육부 홈페이지)

□ 질의요지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1)에서는 학교의 장이 교사(校舍)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환경위생관리자'를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소속 직원에 교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신의견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에서 규정한 소속 직원이란 학생을 제외한 학교의 구성원, 즉 교사, 행정직원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검토내용

◦ 「초·중등교육법」상 교원 및 직원의 의미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상의 교원 및 직원의 의미와 일치하여야 할 근거는 없음.

1)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①학교의 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환경위생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제3장1)으로 "학생과 교직원"을 따로 정하고 있는 바, 제19조 내지 제22조를 보면 §19. 교직원의 구분(교장·교감 및 교사의 배치, 행정직원 등의 배치), §19의2.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20. 교직원의 임무, §21. 교원의 자격, §22. 산학겸임교사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원과 행정직원의 임용자격 및 방법, 각각

의 역할 및 배치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교원과 직원의 개념을 다르게 표현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달성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다른 법령을 규정함에 있어 「초·중등교육법」과 같이 교원과 행정직원의 의미를 일치시켜야 하는 것은 아님.

◦ 이 규칙은 본질적으로 '학교장의 의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며, 이 조항으로 환경위생관리자를 누구로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학교장의 재량을 제한하려는 것은 아님.

1) 【초·중등교육법】 제3장 학생과 교직원

(제1절 학생)

제17조 (학생자치활동) 생략, 제18조 (학생의 징계) ①-② 생략

(제2절 교직원)

제19조 (교직원의 구분) ①학교에 두는 교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31>

1. 삭제

2.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수 100명이하인 학교 또는 학급수 5학급이하인 학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3. 각종학교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②학교에는 교원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등 직원을 둔다.

③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배치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①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교육청 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②제1항의 순회교사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교직원의 임무) ①-④ 생략

제21조 (교원의 자격) ①교장 및 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전문상담교사(1급·2급)·사서교사(1급·2급)·실기교사·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의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소속하에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1.1.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운영과 교원의 자격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산학겸임교사 등) ①-② 생략

- 「학교보건법」 제4조1)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3에서는 학교의 장에게 교사(校舍)안에서의 환경위생 등에 대한 유지·관리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관리자를 지정·운영토록 한 것으로

- 별도의 관리자를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 하게 하거나 또는 행정직원으로 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속된 교원이나 행정직원 등에서 학교의 장이 학교 형편에 따라 지정토록 하게 하려는 것이었음.

- 따라서 학교장에게는 ‘환경위생 관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것임.

○ ‘소속 직원’의 사전적 의미 및 교직원을 직원과 동일한 개념으로 규정한 입법례

- 소속직원(所屬職員)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기관이나 조직에 딸린 사람이 직장에서 일정한 직무를 맡아보는 사람”으로 해석되며 이와 같이 문언의 의미가 일반적인 시각에서도 학교의 장을 제외한 모든 소속 교원과 행정직원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보여짐.

- 특히, 「학교기업의설치·운영에관한규정」 제10조에서는 「교직원」을 「직원」과 동일한 개념으로 규정한 사례2)도 있음.

1) 【학교보건법】 第4條 (學校의 環境衛生 및 食品衛生) 學校의 長은 教育人的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校舍안에서의 換氣·採光·照明·溫濕度의 調節, 上下水道·化粧室의 設置 및 管理, 汚染空氣·廢棄物·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분진 등의 豫防 및 처리 등 環境衛生과 食器·食品·飲料水의 管理 등 食品衛生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학교기업의설치·운영에관한규정】 제10조 (보상금의 지급) ①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교기업에서 순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그 수익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의 용도로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순수익 재원의 성격, 순수익 금액의 규모, 관련 직원 및 학생의 학교기업에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지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학칙으로 정한다.

▶ 환경위생관리자 지정 관련 “직원”에 대한 전교조 입장

소속 직원에 교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 환경위생관리자 지정 대상인 “소속 직원”에 교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보건교사의 경우)

(1) 학교보건법의 입법 목적 및 적용에 있어서 유의할 점 (보건·환경 입법 목적 구분 해석적용의 원칙)

학교보건법의 입법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에 대한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것(보건)이 그 하나이고, 학교 시설 및 학교 근 주변의 교육적 분위기 조성을 해하는 시설을 정리하여 장소적 교육환경을 정화하고자 하는 것(환경위생 정화)이 그 하나이다.

상이한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입법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학교보건법의 입법 기술은 그 적용에 있어서 항시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목적에 구분한 해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2) 보건교사의 “환경위생 유지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직무 해석의 유의점

보건교사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둔다(학교보건법 제 15조 관련) 학교보건법 시행령에는 보건교사의 직무로 “환경위생 유지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학교보건법에서 “환경”이라는 용어가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 해석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입법 목적의 구분 적용 원칙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즉 보건교사의 직무로서의 ‘환경위생 유지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은 일례로 법정 전염병의 유행 시기에 학생과 교직원의 전염병 예방이라는 “보건”적 목적을 위하여 방역을 시행하도록 권고 또는 제안하는 업무 등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보건교사가 의료인이라는 자격상의 전문적 소양에 근거한 판단에 의한 직무로서, 학교의사, 학교약사에게도 주어질 직무로서, 환경위생관련 직무 규정은 ‘학교 시설 및 주변의 시설 정화’라는 “환경위생”적 입법 목적과는 다른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3) 학교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대상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의 구성원을 학생과 교직원으로 구분하고 있고, 교직원은 다시 교원과 직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은 학교장은 교육청에 설

비 및 전문업체에 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무적 현실은 환경위생관리자가 교장의 명의로 요청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학교 내 시설에 대한 환경위생 측적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설비를 개선하는 것은 학교운영을 위한 행정적 업무로서 초·중·고·고·육법 상 행정직원, 즉 “교원”이 아닌 “직원”이 담당해야 할 업무라고 할 수 있다.

■ 현 시행규칙의 “소속 직원” 용어의 문제점

(1)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상 “소속 직원” 용어 사용의 문제점

법령에 ‘소속 직원’이란 용어가 사용된 법률은 280여개로 그 대부분의 경우가 위원회(혹은 단체)의 임원을 지정함에 있어 “위원장이 소속 직원 가운데 한 명을 지정하라”는 형태로 “소속 직원”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소속 직원이란 용어를 사용한 위원회 내지 단체의 경우, 그 직원의 의미는 교원과 직원이 구별되는 특수성이 없는 일반적인 조직의 경우이다.

학교와 관련된 법령에 있어서 학교라는 교육적 특수 상황을 간과하고서는 논의할 수 없다. 학교환경위생관리자가 환경부가 아닌 교육인적자원부에 소속된 것도 학교의 교육적 특수성에 근거한 이치라고 해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소속 직원’이라는 용어를 일반 위원회(단체) 조직에서 사용하는 것과 아무런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것은 법 해석의 명확성을 저해할 수 있다.

(2) 시행규칙 상 “소속 직원”의 해석

환경위생관리자의 주된 업무는 학교 내 환경 위생 관련 측정 및 시설·설비 개선이 주된 내용으로 실무상 환경위생관리자는 일정시간의 연수를 받아야 하는 등 세부적이고 동시에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교원을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하는 경우, 교원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담당업무를 변경하게 되는데, 법경제학적 측면에서 연수 등의 교육비용을 고려하면 업무 변경이 빈번한 교원보다는 업무가 비교적 고정적인 직원을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하겠다.

또한 법리적 해석으로,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제 2조 정의 규정에서 학교의 정의를 초·중·고·고·육법에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유추하면 초·중·고·고·육법상의 교원과 직원이란 용어 역시 학교보건법에 준용하여도 무리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초·중·고·고·육법과 학교보건법의 전체로서의 법체계상의 통일성을 해하지 않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덧붙여 학교보건법령에서는 모두 교직원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소속 직원으로 표현된 경우는 환경위생관리자 지정의 규칙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특별히 교원까지 포함하는 교직원의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니라고 유추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학교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대상은, 업무의 행정적 성격, 법경제학적 측면, 법리상의 유추 해석 등을 고려한 결과, 교원을 제외한 직원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 학교장의 재량권 제한 여부

법문의 “소속 직원”을 교직원 전체가 아닌, 교원을 제외한 직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은 앞서 살펴보았다. 문제는 이러한 해석이 학교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에 따르면 학교장이 각 학교의 상황에 적합하게 재량껏 학교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에 있지, 그 지정대상 범위를 한정하여 학교장의 재량권을 제한한 규정이 아니라고 해석한 바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규정은 학교장의 재량권을 의도적으로 제한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업무의 성격이 행정적 업무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임의적 재량권을 행사하여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활동에 매진해야 할 교원을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토록 하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의 규정을 제한하게 되어, 시행령의 형식으로 법률을 제한하는 법률우위원칙에 반하는 사태를 유발한다. 더 나아가 헌법이 제 3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해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대상을 교원을 제외한 직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률우위의 원칙에 반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학교장의 재량권을 제한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반례로 제시한 학교기업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의 경우 제 10조 제 1항에서는 “교직원”이라는 용어를, 제 2항에서는 “관련 직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 2항의 “관련 직원”을 “관련 교직원”으로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는 방향이 되겠다. 교육법적 성격과 기타 법분야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법률을 제정(입법)함에 있어서는, 교육적 특수성을 고려한 용어의 명확화를 통해 법체계 전체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참고자료]

환경관리인은 환경행정의 기본 3원칙(사전배려의 원칙, 원인자 책임원칙, 협동의 원칙) 가운데 협동의 원칙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이다. 독일의 경우 환경관리인(Umweltschutzbeauftragte)은 사업장 내에서의 자율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직접적으로 행정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즉 행정청은 환경관리인에게 아무런 지시도 내릴 수 없으며, 환경관리인은 행정청에 정보제공의 의무도, 자료제출의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관리인은 행정청의 지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행정청이 직접적으로 환경관리인을 지시, 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독일의 환경관리인제는 자율적인 환경관리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는 데 대하여 우리의 환경관리인제는 자율적 통제 수단보다는 환경보전을 위한, 직접적 명령적 수단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김연태, 1999, 고려대학교 출판부 환경보건작용연구 121-122p>

따라서 우리의 환경관리인제도는 행정청과의 지속적인 연계가 필요하므로 업무에 요구되는 시간과 노력은 상당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교육적 목적이 주된 교원이 맡기에는 교원의 주 업무를 해할 우려가 심히 크다.

<참고 : 628 기자회견 자료>

자료2. 교육부의 학교환경위생관리자 지정의 문제점

- 부서별 환경관리자 지정 현황을 비교해 보면, 환경부 등은 시설관리자가, 노동부는 별도의 전문인력이 관리하고 보건관리자가 지도·조언을 하지만, 교육부는 소속 직원을 교원을 포함하는 교직원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교사, 그중에서도 주로 보건교사에게 이를 부과하도록 조장하여 보건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함

다중이용시설공기질관리법 (노동부,교육부제외 각 부처 공기질 관리, 환경부로 통합)	산업안전보건법(노동부)	학교보건법(교육부)
제5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보건관리자등) ①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6.3.24>	제3조의3 (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①학교의 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환경위생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시행규칙>
비교		
시설관리자가 공기질 관리 및 관련 시설 정비 등 환경위생 담당	측정,설비 전문인력 직접 배치, 지도·조언하는 보건관리자배치	초중등교육법 상 교원과 직원이 엄밀히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교직원(교원+직원)"으로 해석, 교사에게 시설관리 및 설비 측정 업무를 부과하려 함

-학교보건법의 구조와 취지에 비추어,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는 '보건관리'이며, 환경관리자 지정으로 인해 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는 명백하게 교육당국이 불법을 조장하는 것임

	학교보건법	해설
제 1 조, 목적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보건관리 /환경위생정화 분리
제4,5,6조 환경위생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등	환경위생의 내용
제9조, 13조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위향상, 영양관리, 질병의 치료 및 예방, 약물남용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의 내용

	신체검사결과 또는 신체검사에 갈음하는 건강진단의 결과 필요한 때에는 교직원에 대한 질병의 치료 및 근무여건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보건교사	*학교에는...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를 담당하는...보건교사를 둔다.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

-학교 현장의 현실적 측면: 보건교사의 적정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보건교육 및 응급처치 등 보건교사의 교육활동-보건관리를 팽개치고 시설관리를 할 수는 없다. 교육부(청) 단위에서도 환경위생(공기질, 먹는물, 환경 관리 등)관련 교육은 교사 출신의 장학사가 아니라, 교육 행정직이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승진 점수를 받고 있다.(참고자료). 따라서 학교에서 행정직 대신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첨부>

환경위생관리자로서 직원의 범위에 관한 의견

이기우¹⁷⁾, 김대유¹⁸⁾

1. 문제의 개요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분진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음료수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학교의 장은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3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환경위생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쟁점이 되는 것은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할 직원 중에 교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2. 소속직원에 교원이 포함되는 지 여부에 관한 의견

17) 대한교육법학회 부회장, 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
18) 청소년 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서문여중 교사

교육관계법은 교직원 중에서 교원과 직원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초·중·등교육법 제 19조에 의하면 교원에는 교장, 교감, 교사 등이 포함된다. 이와는 별도로 직원에 관하여 “학교에는 교원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등 직원을 둔다.”고 함으로써 직원과 교원을 명백히 구별하고 있다. 교원과 직원을 합쳐서 부르는 개념으로는 “교직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에 따르면 직원에는 교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하다.

특히, 교직원의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동법 제20조 제3항에서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4항은 직원의 직무에 대하여 “행정직원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 3 제1항에 의해서 지정하는 환경위생관리자의 직무는 동 시행규칙의 근거법인 학교보건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교사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분진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음료수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이다.

이러한 직무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3항이 규정하는 교사의 직무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문맥상 명백하다. 오히려 이러한 직무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이 규정하는 직원의 직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동법 동조 동항이 직원의 직무를 “행정직원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환경위생관리자의 직무는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에 해당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위생관리사를 교사중에서 지정하려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의한 직무규정에 위반함이 명백하다. 더구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 3에서 명백하게 “소속 직원 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환경위생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한다고 규정하여 환경위생관리자를 “직원”으로 임명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에 교사까지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백히 실정법의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동 시행규칙 제3조의 3이 규정한 “직원” 속에 교사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그 근거로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다른 법령(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규정함에 있어 「초·중·등교육법」과 같이 교원과 행정직원의 의미를 일치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만약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의 직원에 교사가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이러한 시행규칙은 상위법인 법률인 초·중·등교육법 제20조가 정하는 교사와 직원의 직무범위와 상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상위법인 법률을 하위법인 시행규칙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되어 주장으로서 타당성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은 법체계상 성립될 수 없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만약 구태여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직원과 다른 의미를 학교보건법에서 “직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가급적이면 용어정의를 법률로써 하여야 한다(입법해석). 법은 개개의 법률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체계를 이룬다.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그때그때의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률전체를 체계적으로 고려하여 상호 모순이 없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보건법 제3조의 3 제1항에서 명시적으로 환경위생관리사를 “직원”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여 초·중등교육법과 일치하도록 잘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위반되도록 교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해석자의 권한을 넘는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의 3 제1항이 규정하는 직원은 문언에 충실하게 교원을 제외한 직원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 해석이 초·중등교육법 제 19조 과 제20조가 규정하는 직원의 의미와도 일치하므로 체계적으로도 맞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법규)

*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9조 (교직원의 구분) ①학교에 두는 교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31>

1. 삭제
2.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수 100명이하인 학교 또는 학급수 5학급이하인 학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3. 각종학교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 ②학교에는 교원의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등 직원을 둔다.
 - ③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배치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 교육법 제20조

제20조 (교직원의 임무)

- ①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04.1.29>
- ②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8.31, 2004.1.29>
- ③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04.1.29>
- ④행정직원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4.1.29>

■ 법제처 답변 : 보건교사의 질의에 대한 법제처의 답변

한 교사의 ‘직원’을 ‘교직원’으로 해석할 수 있는냐는 질의에,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에 질의해달라고 주문하면서 ‘학교보건법령에서 모두 교직원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소속 직원으로 표현된 경우는 환경위생관련 규정에서만 나오고, 법 4조에서 말하는 환경위생이라는 업무의 성격상 교원의 업무로 보기에 어려울 것이며, 특별히 소속 직원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교원을 포함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 서울시교육청 학교행정업무편람 제10편. 학교시설관리 제1장. 학교시설관리 개요 - 나. 유지관리계획 : ~ 실내 환경 측정 등의 일상점검계획이 있음.

◆ 학교보건법과 학교보건법 시행령 중 어느 것이 우선인지?

교육부 답변 (2006년 4월 25일 회신)

교육인적자원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Microsoft Internet Explorer

주소(D) http://www.moe.go.kr/mypage/mypage03-01_view.html?PageSize=10&Page=1&Page1=&Page_Group=10&Mode=2&Board_Code=&Board_Main

내역인원보기

신청인	조동선	연락처	017-326-8209
이메일	yongsun66@nate.com	조회수	
제목	학교보건법과 학교보건법 시행령		
질문	안녕하십니까? 학교에서 일을 하다보니 학교보건법과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내용이 서로 달라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느 법률 따라야 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 우선인 걸로 아는데요.		
첨부파일			
담당부서	학교체육보건급식과	담당자	정희권
이메일	jung3412@moe.go.kr	전화번호	02-2100-6396
답변	정희권님의 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학교보건법은 대통령령인 학교보건법시행령에 우선입니다.		

2005년 6월

교육부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¹⁹⁾

전교조보건위, 건사연 공동연구(우옥영, 김지학, 장미란)

I. 의견서 개괄

'학생과 교직원의 보다 쾌적한 환경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이같은 방식으로는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함.

1. 이 안은 환경위생을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예산배치와 지원 시스템은 고려하지 않은 채, 상급기관에 대한 형식적인 규제와 보고 위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을 갖기 어려움.

-이는 규제완화와 분권화, 통합성을 지향하는 현 정부 방침에도 위배되며, 특히 전문성이 부족한 교육부가 별도로 이를 관리하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부 등과 연계한 실질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안을 개정해야 함.

-특히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학교의 오염물을 검사하도록 하는 것은 검사의 신뢰성 전문성,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각 단위학교에 값비싼 환경관리기구를 구입해야 하는 등 엄청난 국가 예산을 낭비할 수 밖에 없음.

2. 또한 개정안의 식품위생에 관한 조항은 학교급식법·식품위생법에서 중복되는 내용으로 학교급식법이 학교보건법에서 분리된지 오래인 바, 학교보건법에서 삭제하고 학교급식법으로 통합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새삼 식품위생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반대함.

3. 한편 학교보건법은 보건관리와 환경위생을 다루면서 제9조에서 보건교사의 역할을 <보건관리>로 명시하고 있지만, 환경위생은 누가 그 역할을 할 것인지 모호한 상태임. 시행령 6조에 보건교사의 직무 중 <환경위생> 부분이 언급되어 있으나 이는 법체계상 상위법과 충돌하는 내용이며, 특히 교원정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거대

19) 2005. 7. 교육부에 공문으로 의견서 제출(공문내용: 교육부의 환경위생 관련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그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갖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불임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입법의 취지에 걸맞게 정책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 내용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교육부의 환경위생관련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학급이 많아 보건관리도 제 역할을 다하기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할 때, 급식관리처럼, 실질적인 관리는 하지 못한 채 책임만 교원들이 떠안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임.

4. 따라서 학교보건법 제 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및 시행령 2조(보건실의 설치기준) 6조(보건교사의 직무)등을 개정하고 지자체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함. 그리고 교육부가 그간 학교보건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였던 점, 중복법률 및 상하위법 충돌 등에 대해 법적 자문이 부족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추후 개정과정에서는 이를 올바르게 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II. 상세의견

1. 학교보건법령상 환경위생 부분에 대한 의견

1) 문제의 제기

'새학교증후군' 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교사 안에서 실내공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요소에 대한 유지, 관리기준의 강화라는 학교보건법의 개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취지와 행정목적의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는 빠진 채 규제와 보고 일변도로 구성된 현행 학교보건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방식에 대해서는 그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2) 현행 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환경위생' 규정의 문제점

가) 학교보건법상 '환경위생' 개념의 모호

학교보건법상 '환경위생'이라는 용어는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법제4조는 '환기, 채광, 상하수도 관리, 오염공기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물, 화학적 의미의 환경위생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 5조, 제6조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관한 규정에서는 제1호는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등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시설을 금지시설에 대해 규정하여 위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으나, 제11호는 '호텔, 여관, 여인숙' 등을 금지시설로 규정하여 위와는 다른 '학습 환경' 내지는 '사회적 환경'의 의미로 '환경위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환경위생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모호성 내지는 광범위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의 법률에 쓰인 동일한 단어가 이중적 의미를 가지는 것은 법규정의 내적 안정성과 통일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법 적용에 있어서도 혼란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의 의미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도록 '환경위생'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

나) 실질적인 관리시스템 부재- 시행규칙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실효성 문제

-교사 안에서 환경위생 관리기준 강화는 필요하나 현재 학교현장에 환경위생전문가가 부재한 상황에서 소속공무원이 직접 학교의 오염물질을 검사하는 것은 환경위생 검사로서 갖추어야할 전문성, 신뢰성,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음

- 더구나 공기 질 관리 등을 환경부가 통합 관리하도록 한 취지는, 환경위생이 지역의 환경위생과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가 요청되고 있는 것인 바, 전문성도 없는 교육부가 별도로 이를 관리하려하고, 그나마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인적 물적 인프라도 없이 규제와 보고만을 강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세우고 있어, 학교환경위생의 강화라는 개정취지에 맞는 행정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지극히 의문스러운 상황임

-이는 필연적으로 학교단위에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가 되면서, 실효성도 없는 형식적인 측정과 보고, 기록 등의 잡무를 교원들에게 부과하고, 문제가 발생할 때 부당하게 말단의 담당자 징계로 떠 넘겨 버리는 상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

-또한 현재 학교보건법 시행령2조 및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해 학교보건실에 통풍건습계, 흡구온도계, 조도계, 가스검지기, 먼지측정기, 소음계, 수질검사용기구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각 학교마다 이를 갖추도록 하는 것은 엄청난 국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전문가도 없는 상태에서 이를 구입하도록 하는 것은 관리에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됨.

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상위법 위반의 가능성

법 제15조는 '학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를 담당하는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둔다.'고 하여 보건교사의 직무범위를 보건관리로 한정하고 있고, 제9조는 '학생의 보건관리'의 내용으로 '학생의 체위향상, 영양관리, 질병의 치료 및 예방, 약물남용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13조는 '교직원의 보건관리'의 내용으로 '건강검사결과 또는 건강검사에 갈음하는 건강검진의 결과 필요한 때에는 질병의 치료 및 근무여건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1호 나목은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보건교사의 직무로 포함시키고 있음. 이는 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건관리'라는 보건교사의 직무를 벗어나는 것으로 하위법인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도 없이 상위법의 규정범위를 벗어나 보건교사의 직무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보건교사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은 삭제함이 바람직함

3) 대안의 모색

- 지자체와 연계 강화, 교육부 관련부서 재편-

가.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중 학교생활공간공기질 관리에 관한 기준을 '다중이용시설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에 준하여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환경행정의 통합적 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나. 곧 시군구 일반행정기관의 환경행정담당 부서에 '학교 환경위생 지원 부서'를 두고,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와 제13조(오염도 검사기관)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 중 일부를 선정하여 업무연계를 맺어 공기질 검사 등 전문적인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타당함. 장기적으로는 학교환경지원센터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각 학교별로 충분한 예산지원이 어려운 상태에서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기구들을 구입하는 것보다 지자체와의 연계를 강화하여(장기적으로는 학교 환경위생 지원센터를 설치), 공기질이나 오염물 검사를 담당하는 측정기관, 검사기관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임

다. 한편 각 시군구 교육청 단위에는 현재의 보건직을 '학교 환경위생 지원계'로 재편, 환경부와 협의 하에 교육청 관할 범위 내의 학교들에 관한 환경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보건관리(보건교육포함)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건관리·교육 부서를 설치하여 보건전문직을 채용하도록 하는 것이 예산의 측면이나 전문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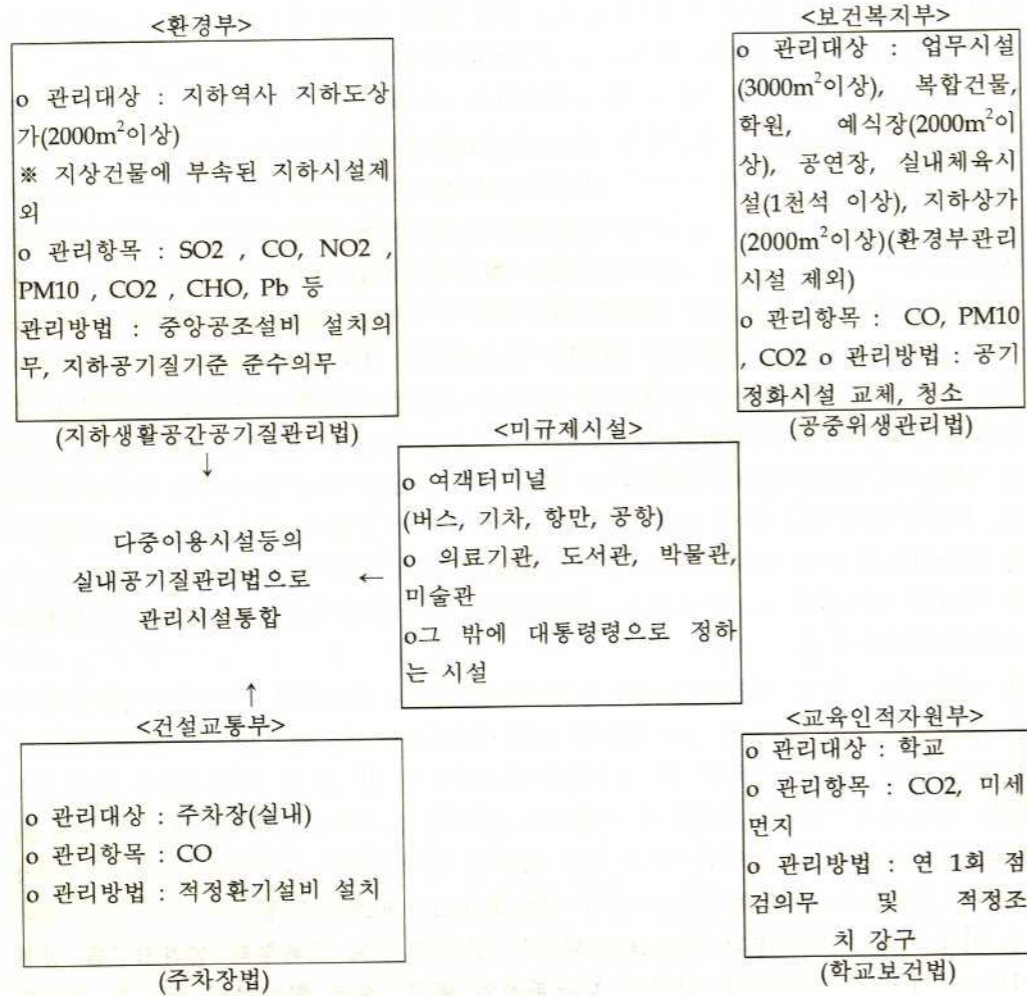
라. 각급 학교 관할 지역의 유관행정기관장은 학교생활공간의 환기설비 현황, 공기질 측정결과 등에 대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 각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은 교육감 및 교육장과 공유하도록 함 → 위 측정기관과 검사기관들을 이용하여 정기적(시행규칙 <별표6> 정기점검), 비정기적(<별표6> 특별점검)으로 검사와 측정을 행하고 그 자료를 학교와 검사기관에 보관하도록 하고, 위 자료들을 교육장, 교육감 등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제출하게 함.

마. 이를 위해 지자체장과 교육감은 환경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의 협의기구를 상설화하고, 학교환경지원센터, 나아가 보건관리와 통합적으로 학교보건 전반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선공약인 학교보건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할 것

*참고자료- 환경행정의 통합과 관리

환경이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고 환경경영이 기업의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시대로 접어듬에 따라, "삶의 질"향상을 위해 정부, 국민, 기업 모두가 환경친화적 사고와 행동이 요구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보다 근원적이고 적극적인 해결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관리방법도 선진화하며,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업무의 통합기틀을 마련하고자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등의 지하생활 공간의 공기질을 관리하는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개정

하였으며²⁰⁾ 실내공기질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으로 있다. 동 보고서의 부처별 실내공기질 관리 체계는 다음과 같다.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주요법규로는 환경부 소관법률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보건복지부 소관인 “공중위생관리법”이 있고, 이에 따라 각 시도 일선 행정 기관에서 관할지역내 실내공기질 관리 개선을 위하여 환경위생 전문 행정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정개발 연구원 도시환경연구부 부장 김운수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일원화된 통합 관리를 통해 실내 공기질 관리 지침을 개발해 실내공기질의 오염물질 측정과 분석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리지침은 실내 공기질 관리에 기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일본은 새집증후군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

20) 실내공기질 관리대책 및 향후 발전방향, 장재구, 환경부 생활공해과 과장

관련업계 등이 참여하는 ‘건강주택 연구회’를 조직하여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실내 공기질 관리업무가 환경부, 보건복지부, 건교부, 교육부, 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으로 통합된 관리주체의 일원화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하여 건교부, 노동부, 환경부의 업무는 통합되었으나, 학교의 경우에는 여전히 학교보건법을 적용하려 하고 있어, 일선 현장 전문가가 없는 학교에서는 고가의 장비 구입 및 관련교육예산 낭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지역내 유관행정기관의 협조로 관할구역내 각급학교의 실내공기질을 전문적으로 측정, 관리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연구 분석하여 범국가적 통합적인 환경정책을 마련하는 데 이용하는 한편 관할 교육장 및 교육감과 그 결과를 공유하여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환경관련 질환 감시 체계 등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참고> 00시 환경정책과 업무 소개

구분	업무내용
환경기획담당	환경관련 중장기연도별 계획 수립 및 시행, 환경개선특별회계관리, 환경관련단체 육성지원, 환경보존홍보, 환경보전기금관리, 지방환경위원회 운영 등
대기보전담당	대기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대기측정망 고시 및 운영, 고체연료 사용승인 및 청정연료 공급, 비산먼지 및 악취방지, 오존경보제, 대기배출업소 관리, 환경친화기업육성, 환경산업 금융지원 알선 등
생활공해담당	소음진동방지계획 수립 및 시행, 소음측정망 및 규제지역 고시운영, 소음진동배출업소 관리, 다중이용시설등실내공기질관리, 환경신문고 운영관리,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저공해자동차 보급, 운행자 검사 대행자 관리
자연생태보전담당	야생동식물 조수보호와 수렵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평가

이미 지역 행정기관에는 지역환경 담당 부서가 있고,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하여 전문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관할구역내 학교의 생활공간 공기질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환경부의 인증을 받은 공기질 검사기관 명단도 구비되어 직접 검사 및 의뢰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현재 학교 저수조나 소방시설 등도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아닌 일반 유관행정기관과 연계하여 관리되고 있으므로 학교 생활공간 공기질 행정관리의 통합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임.

4) 참고-입법적 대안

가) 입법형식

‘환경위생’에 관한 내용을 현행 학교보건법령에 두면서 환경행정의 통합과 효율성

신장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내용일부를 개정하는 방법과 가칭 '학교환경위생법'을 만들어 환경위생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법체계로 규율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음.

두 가지 방식에 있어 입법형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다만 어떤 방식을 취하던지 간에 학교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서도 환경행정의 통합과 효율성 신장이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환경위생'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자격기준과 전문성에 부합하도록 환경위생에 관한 직무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법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나) 학교보건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관한 의견(현행법체계 하에서 개정하는 경우를 상정함)

* 학교보건법에 관한 의견

- ▶ 법 제2조(정의) : '환경위생'에 관한 정의 규정 신설하여 그 의미를 구체화함.
- ▶ 법 제16조 (보건기구의 설치 등)에 지자체와의 연계기구, 혹은 학교 환경위생지원센터의 설립 근거 규정을 마련.
 - 현행법 제16조 (보건기구의 설치 등) 교육감 및 교육장소속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보건관리에 필요한 기구 및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예산지원 근거규정 마련.

*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관한 의견

- ▶ 제6조 (학교의사·학교약사 및 양호교사)
 - '양호교사'의 명칭변경 → 초·중등교육법상 양호교사를 보건교사로 변경하였으므로 이에 맞추어 '보건교사'로 용어 통일
 - 제3항 제1호
[현행] 양호교사의 직무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삭제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 ▶ 제2조(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
<별표1> 제5호 중 가스검지기, 먼지측정기, 소음계, 수질검사용 기구 등 고가의 기구로 현재 학교에서 갖추지 못한 기구들이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교육청 및 환경부의 학교 환경위생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함.

▶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제1항

- [현행] 학교보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유지, 관리하여야' 하는...
- [의견] 학교의 장이 학교 환경위생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유지, 관리하여야 하는...으로 하고 식품위생 조항 삭제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관한 의견

▶ 제3조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 제2항 [개정안] ...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의견] ...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학교 환경위생 지원부서로...식품위생은 삭제

▶ 제3조의2(보고 및 검사)

- 제1항 [개정안] ... 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 [의견] ... 교육청 환경위생 지원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 제2항 [개정안] ... 지자체와 연계... 관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오염정도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

- 제3항 [의견] 환경위생에 관한 전문가가 없는 학교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명하는 것은 실효성 없이 책임만을 부과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지원부서(내지 센터)에 개선조치를 의뢰하고 교육부 환경위생 지원부서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함이 바람직함

▶ 제3조의3(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점검방법 등)

- [의견] 고시권자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되어 있으나, 환경행정의 통합, 전문성의 관점에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함이 타당

▶ 제3조의4(환경위생 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등)

- 환경위생 지원센터나 교육청 환경위생 지원과가 설치되더라도 학교 내의 일정한 행정처리나, <별표6>의 일상점검을 위해서는 학교 내부에 관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2.현행 학교보건법령상 '식품위생'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

1) 문제점

- 식품위생, 환경위생관련규정이 분화되지 않고 명확한 개념 정의 없이 학교보건법령에 규정되어 있음.

- 현행 법체계상 '식품위생' 관련내용은 주로 급식과 관련되어 있어 학교급식법에서 통합하여 일원화함이 바람직함. 그러나 교육부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히려 '식품위생'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려 하는 우를 범하고 있음.

- 학교보건법 제정 당시인 1967년에는 동법 제12조 규정에 학교급식의 근거규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1977년 제정된 학교급식규칙(문교부령)이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던 바 있으나 동 규칙은 1981년 학교급식법 제정 이후 그 내용이 학교급식법에 흡수되면서 1983년 폐지되었음. 따라서 이후 학교급식에 관한 근거규정은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의2는 위생 및 안전 점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2)대안

- 곧 현재 학교보건법 상 식품위생에 관한 내용은 학교보건법 제정 당시 학교보건법이 학교급식에 관한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었던 상황의 반영이므로 별도의 학교급식법이 제정되어 그 위생 및 안전까지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법체계 하에서는 학교보건법상 규정된 식품위생에 관한 내용을 학교급식법에 옮겨 일원화함이 바람직함. 이렇게 하는 것이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해서도, 법체계의 간결성, 통일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함.

Ⅲ. 관련 법 규정

1. 식품위생 관련 규정

가. 현행 학교보건법령상 '식품위생' 관련 규정

현재 '식품위생'과 관련된 내용으로 학교보건법에는

법 제4조 (學校의 環境衛生 및 食品衛生) 學校의 長은 教育人的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校舍안에서의 換氣·採光·照明·溫濕度の 調節, 上下水道·化粧室의 設置 및 管理, 染空氣·廢棄物·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분진 등의 豫防 및 처리 등 環境衛生과 食器·食品·飲料水의 管理 등 食品衛生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9조 (學生의 保健管理) 學校의 長은 學生의 體位向上, 營養管理, 疾病의 治療 및 豫防, 藥物濫用의 豫防 등을 위하여 필요한 指導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가 규정되어 있고,

동 시행령에는,

제2조의2 (보건실의 설치기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실에는 학교보건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법 제9조 (學生의 保健管理) 學校의 長은 學生의 體位向上, 營養管理, 疾病의 治療 및 豫防, 藥物濫用의 豫防 등을 위하여 필요한 指導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2.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검사에 필요한 기구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구체적인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제3조의 국립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고, 초·중등교육법 제3조의 공·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 별표1. 보건실에 갖추어야하는 시설 및 기구 >

.....

5.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검사용 기구 : 통풍건습계, 흑구온도계, 조도계, 가스검지기, 먼지측정기, 소음계, 수질검사용기구 등

가 규정되어 있으며,

동 시행규칙에는,

제3조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①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3. 오염공기·폐기물·소음·미세먼지의 예방 및 처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4.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 별표5. 식기·식품 및 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 >

1. 식기·식품의 관리기준

- 가. 식품 등을 취급하는 재료보관실·조리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할 것
 - 나.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할 것
 - 다. 식품 등의 제조·조리·가공 등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위생복·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것
 - 라. 식품 등의 제조·조리·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할 것
 - 마.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지 아니할 것
-

가 규정되어 있으며,

또 시행규칙개정안에는,

제3조 제2항(위생상태확인점검), 제3조 제4항(점검기록, 보존), 제3조의 2(보고 및 검사), 제3조의3(점검방법)

등이 추가되어 있다.

-----<법령변천 참고자료>

제정 1967.03.30 (법률 제1928호) 문교부
학교보건법

第1條 (目的) 이 법은 學校의 保健管理에 필요한 事項을 規定하여 學生 및 敎職員의 健康을 保護·增進하게 함으로써 學校敎育의 能率化를 기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12條 (同前) 國民學校 兒童에 대하여는 文敎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給食을 實施한다.

제정 1977.01.14 (부령 제401호) 문교부
학교급식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학교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이하 "학교급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1978.11.23 (부령 제432호) 문교부
학교급식규칙

폐지 1983.02.25 (부령 제2호) 체육부
학교급식규칙

학교급식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정 1981.01.29 (법률 제3356호) 문교부
학교급식법

第1條 (目的) 이 법은 學校給食에 관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學校給食을 통한 學生의 心身의 健全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國民食生活 改善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7條 (專擔職員의 配置)

- ①學校給食을 實施하는 學校에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一定한 資格을 가진 學校給食專擔職員을 두어야 한다.
- ②서울特別市·釜山市·道敎育委員會의 敎育監 및 市·郡의 敎育長(敎育區廳長을 포함한다)은 學校給食에 관한 業務를 專擔하게 하기 위하여 營養에 관한 專門知識이 있는 職員을 둘 수 있다.

일부개정 2001.01.29 (법률 제6400호) 교육인적자원부
第7條 (專擔職員의 配置)

- ①學校給食을 위한 施設과 設備를 갖춘 學校給食施設과 學校給食供給業者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一定한 資格을 가진 學校給食專擔職員을 두어야 한다. <개정 1996.12.30>
- ②敎育監 및 敎育長은 學校給食에 관한 業務를 專擔하게 하기 위하여 營養에 관한 專門知識이 있는 職員을 둘 수 있다. <개정 1993.12.10>第7條 (專擔職員의 配置)

일부개정 2003.07.25 (법률 제6935호) 교육인적자원부
학교급식법

第7條 (영양교사 등의 배치<개정 2003.7.25>)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양교사를 둔다. 학교급식공급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학교급식전담직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3.7.25>

②教育監 및 教育長은 學校給食에 관한 業務를 專擔하게 하기 위하여 營養에 관한 專門知識이 있는 職員을 둘 수 있다. <改正 1993.12.10>

2. 현행 학교보건법령상 '환경위생' 관련규정

현행 학교보건법상 '환경위생'과 관련된 규정으로,

第1條 (目的) 이 法은 學校의 保健管理와 環境衛生淨化에 필요한 事項을 規定하여 學生 및 敎職員의 健康을 保護·增進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5.3.24>

第4條 (學校의 環境衛生 및 食品衛生) 學校의 長은 教育人的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校舍안에서의 換氣·採光·照明·溫濕度의 調節, 上下水道·化粧室의 設置 및 관리, 染空氣·廢棄物·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분진 등의 豫防 및 처리 등 環境衛生과 食器·食品·飲料水의 관리 등 食品衛生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5.3.24>

第5條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의 設定)

①學校의 保健·衛生 및 學習環境을 보호하기 위하여 教育監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을 設定하여야 한다.

第6條 (淨化區域안에서의 禁止行爲 등)

①누구든지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안에서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行爲 및 施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區域안에서는 제2호, 제2호의2, 제4호, 제8호, 제10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에 規定한 行爲 및 施設중 教育監 또는 教育監이 委任한 者가 學校環境衛生淨化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學習과 學校保健衛生에 나쁜 影響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行爲 및 施設은 제외한다. <개정 1991.3.8, 1998.12.31, 2002.8.26, 2004.1.29, 2004.2.9, 2005.3.24>

1.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排出許容基準 또는 騒音·振動規制法에 의한 規制基準을 초과하여 學習과 學校保健衛生에 支障을 주는 行爲 및 施設

2의2.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를 제외한다)

5. 폐기물처리시설(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의료기관내에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廢水終末處理施設·畜産廢水排出施設·畜産廢水處理施設 및 糞尿處理施設

11. 호텔, 旅館, 旅人宿

...

가 있고,

동시행령에는,

제2조의2 (보건실의 설치기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실에는 학교보건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2.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검사에 필요한 기구

제6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호교사·학교의사 및 학교약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 1990.12.31, 1993.9.27, 2002.2.25>

1. 양호교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실시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찰과 학교의사의 건강상담·건강평가등의 실시에 관한

협조

바. 신체허약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사.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의 방문

아. 교사의 보건교육에 관한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

자. 보건실의 시설·설비 및 약품등의 관리

차. 보건교육자료의 수집·관리

...

가 있고,

동시행규칙에는,

제2조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 학교보건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별표 1.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구체적인 기준>

...

4.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검사용 기구 : 통풍건습계, 흑구온도계, 조도계, 가스검지기, 먼지측정기, 소음계 및 수질검사용 기구 등

제3조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①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별표 2.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

1. 환기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1인당 환기량이 시간당 21.6 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2.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오염공기·폐기물·소음·미세먼지의 예방 및 처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오염공기·폐기물·소음·미세먼지의 예방 및 처리기준>

1. 오염공기의 처리기준

이산화탄소는 1시간 평균 1,000ppm 이하로 할 것

...

4.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학교의 장은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상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실시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에 대하여 점검방법의 지도 및 전문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점검 등)

①영 제3조제1항 및 영 제3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의 설정자 및 관리자는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유치원 및 대학의 환경위생 기준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은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기준에 준하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보건실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고,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관리할 수 있다.

가 있으며,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 관리) 제1항 제4호(별표 4의2), 동조 제2항, 제3항(별표 6), 제4항, 제3조의2(보고 및 검사), 제3조의3(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점검방법), 제3조의4(환경위생 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별표 4의2. 교사 안에서의

공기질 유지 및 관리기준>, <별표 6.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 1. 점검종류 및 시기, 2. 점검방법 등

이 있다.

[참고자료]

1. 참고법령

-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학교급식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다중이용시설등의공기질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식품위생법, 동시행령

2.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3.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서

◎ 참고자료.

먹는 물 관련 법률

1) 식품위생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9.27] [[시행일 2007.1.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2002.8.26, 2003.9.29, 2005.1.27, 2006.9.27] [[시행일 2007.1.1]]

1. "식품"이라 함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조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①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소속기관"이라 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말한다. [신설 2003.04.22, 2005.7.27] [[시행일 2005.7.28]]

②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89·7·11, 92·12·21, 94·12·23 대령14446, 94·12·31, 96·10·14, 98·2·28, 99·11·13, 2005.7.27] [[시행일 2005.7.28]]

1. 삭제 [2005.7.27] [[시행일 2005.7.28]]

2. 위생사, 식품기술사·식품기사·식품산업기사·수산제조기술사·수산제조기사·수산제조산업기사 또는 영양사

3) 먹는물 관리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먹는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먹는물수질감시원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감시원은 환경

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8.1.22> 1. 수질환경기사 또는 위생사·위생시험사의 자격증이 있는 자 2. 대학에서 상수도공학·환경공학·화학·미생물학·위생학 또는 식품학분야의 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3. 전문대학에서 제2호 관련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하고 해당분야에 1년이상 종사한 자 4. 3년이상 수질환경 또는 위생분야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②먹는물수질감시원의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먹는물의 수질관리에 관한 조사·지도 및 감시 2. 먹는물관련 영업에 대한 조사·지도 및 감시

4)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1) 제3조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4.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개정 2005.11.14>

식기·식품 및 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 (제3조제1항제4호관련)

1. 식기·식품의 관리기준

가. 식품 등을 취급하는 재료보관실·조리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 할 것 나.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할 것

다. 식품 등의 보관·운반·진열 시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냉동·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킬 것 라. 식품 등의 제조·조리·가공 등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위생복·위생모를 착용 하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것 마. 식품 등의 제조·조리·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후 에 세척·살균 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할 것 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지 아니할 것

2. 먹는 물의 관리기준

가. 급수시설 설치 (1) 상수도 또는 간이상수도에 의하여 먹는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공급할 것(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지하수 등에 의하여 먹는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 등의 시설을 경유할 것

나. 급수시설관리 (1) 급수시설·설비는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저수조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연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할 것 (2) 지하수 등을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수의 수질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정기적

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다. 먹는물의 공급 등 학생 및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먹는물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제공하되, 가급적 끓여서 제공할 것 라. 지하수 등의 수질검사 상수도 또는 간이상수도에외에 지하수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먹는물에 대하여 는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의 수질검사를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실시할 것